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채우진 의원)

의안 번호	25-3
----------	------

발의년월일 : 2025. 2. .

발의자 : 채우진, 권인순, 백남환,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홍지광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수가 중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1항)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
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관계법령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 1. 21. ~ 1.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을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진료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 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 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 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물의 <u>사용료·입장 료·수강료·주차요금</u> 등을 감 면해 줄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 ----- ----- ----- <u>사용료·입장 료·수강료·주차요금·진료비</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4.]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시행 2024. 5. 14.] [병무청훈령 제2067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신설 항목(진료비) 추가 및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9호,
병역명문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병역명문가의 ‘진찰료·처방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금액 추정

구분	병역명문가 연1회 이용시 (처방전500원×134가문×3명×1회)	병역명문가 연5회 이용시 (처방전500원×134가문×3명×5회)	비고
금액	201,000원	1,005,000원	17가문은 3명~10명

※ 보건행정과-1237(2025. 1. 21.)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정우철
연 락 처	02-3153-8808